

Women's IDC (2006년 1월 31일)

여성장애에 관한 facilitator의 제안에 대한 답변(from 28/30 Jan. 2006)

Women's IDC는 대표자 제안에 근거한 facilitator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초안을 환영한다. 이 제안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여성장애인의 특정권리를 포함하는 동 협약의 초안문(draft text)을 강화한다. 어떤 조항, 예를 들어 교육, 고용, 재활(rehabilitation)은 facilitator의 최종초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답변(reaction)에는 이것을 보완하기(complement) 위한 제안을 포함한다.

전문

Women's IDC

n bis) 여성장애인이 빈번하게 더 큰 위협에 놓여있음을 인식하며,

Replace: gender based manifestations를 포함하여, 집 안팎에서의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폭사나 착취로부터

By: 여성폭력철폐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규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근거:

Women's IDC는 일반적으로 전문에서 폭력 경험에 대해 여성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높은 위협에 대한 인식을 환영한다. 특히 여성장애인이 겪고 있는 특별한 폭력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전문의 특징을 고려하건대, 폭력의 성별특성적(gender-specific) 유형이 폭력에 관한 조항 제16조에 나열되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CEDAW(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또한 이런 관점에서의 인식과 보호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성별에 근거한 폭력의 종합적인 기술은 1993년 12월 20일 유엔총회의 결의 48/104에 의해 채택된 여성폭력철폐에 관한 선언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이 선언에 대한 참조는 동 전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Women's IDC

Women's IDC는 facilitator가 대표자의 제안을 활용하고 제6조 조항에 포함시킨 사실에 매우 기쁘다. 우리의 문건에 지적한바와 같이 Women's IDC는 이것이 여성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의 수정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조항을 명확히 한다.

제6조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평등

1. 당사국들은 여성장애인이 다중차별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추가: 이 목적을 위하여, to this end, 삭제: that) (추가: 성에 근거한 차별없이) 인권전반과 기본적 자유에 있어 여성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empowering→empowerment(대체) 권한부여)와 성인지적 조치(삭제: are)에 주안을 두고 이행해야 한다.(shall undertake)

→즉, 당사국들은 여성장애인이 다중차별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성에 근거한 차별없이 인권전반과 기본적 자유에 있어 여성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부여와 성인지적 조치에 주안을 두고 이행해야 한다.

추가:

1Bis

당사국들은 여성장애인이 다른사람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자신의 재생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권리행사가 영구불평등(perpetuate inequality)화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들은 (추가: 여성장애인이 평등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동 협약에서 규정하는 모든 권리(삭제: of, 즉, 모든 권리"의"삭제) (삭제: 여성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대체: ~에 관한 여타 계획된 행동의 여성장애인을 위해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즉: 당사국들은 여성장애인이 평등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동 협약에서 규정하는 모든 권리에 관한 여타 계획된 행동의 여성장애인을 위해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근거:

Women's IDC가 제안한 제6조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별,gender)평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Women's IDC 여성에 관한 유엔의 인권기준 설정 노력으로부터 도출되는 다음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를 고려한다.

1.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남성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장애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의 공식적 확인 - 제6조 (1)

2. 여성장애인의 다중차별 특히 성(sex)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인식 - 제6조 (1)

3. 여성장애인이 평등한 대우 및 평등한 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제6조 (1)

4. 장애인의 성(gender)에 근거한 장애물을 확인하고 규정함(address)으로써 동 협약에서 규정한 모든 권리를 이행함에 있어 성주류화 접근방식("gender mainstreaming approach")의 사용 -제6조 (2)

5. 여성장애인은 평등한 재생산권을 가진다는 것과 이 권리의 행사가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 -제6조 (1bis)

그들의 재생산권의 행사는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 예를 들어 가정과 공동체에서의 여성의 역할, 교육, 노동, 공공 또는 사적 생활에서의 참여, 보건분야에서의 그들의 요구 및 재할애의 참여 등에 있어, 여성의 평등권을 위한 확고한 이행을 가진다(필요하다?). 동시에 여성장애인은 종종 그들의 장애에 근거해 그들의 재생산권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 중요한 사안은 협약의 일반부분에 그리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제8조 장애에 관한 인식 개선

Women's IDC는 facilitator의 제안을 환영한다.

제16조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

Women's IDC

1항. 당사국들은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사회, 교육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 (삭제: 집 안팎에서)(추가: 사적 및 공적 상황에서) 장애인을, (삭제: 특히 성(gender)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과 학대 (추가: gender based manifestations를 포함하여 상해, 학대, 유기, 유기적 대우 및/또는 폭사) (추가: 강제불임, 낙태, 여성성기절단(female genital mutilation)을 포함하는 폭력)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근거:

전문의 근거와 비교하라. 거기에서 언급하였듯이, 여성장애인이 겪고 있는 특별한 폭력의 유형이 제16조에 포함되어야 한다.

유엔의 sources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여성에 비해 폭력의 희생자가 두배가 많다. 게다가, 그들은 강제불임, 낙태 및 성기절단을 당한다.

강제불임, 낙태, 동의없는 당하는 (의학) 시술의 모든 형태는 폭력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여러 국가들의 관행을 고려하건대, 이점은 특별히 명시되어야 한다.

성기절단은 여성장애인의 생명에 큰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Women's IDC

2항. 또한 당사국들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과 학대를 방지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폭력과 학대를 피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이들의 가족 및 보호자들을 위한 모든 적절한 형태의 성별 및 나이 인지적 (gender and age sensitive) 보조 및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추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보호(추가: 및 예방) 서비스가 나이, 성별 및 장애 인지적(변경: 나이, 성별 및 장애→ 장애, 성별, 나이)임을 보장한다.

근거:

우리는 여서기 제안된 단어의 삽입을 고맙게 생각하며, 마지막 문장에 예방 서비스를 추가할 필요를 강조하고 싶다.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의 추가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보호 서비스를 창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는 나아가 facilitator가 초기에 성 (gender)이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모두에게 그들의 전생애에 걸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이 이전에 장애와 성을 먼저 규정하여 재초안하는 것이 이 협약에 숨겨진 근거임을 환영하는 바이다.

3항, 4항, 5항

Women's IDC

Women's IDC는 제16조 3항에서 5항까지 facilitator의 제안을 환영한다.

제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2 bis) 당사국은 장애에 근거한 불임으로부터 장애아동을 보호한다.

Women's IDC

장애아동에 관하여 장애에 근거한 불임의 문제가 이 조항하에서 언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위
락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omen's IDC는 제16조하에서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강제
불임과 낙태를 정의하기 위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하게 반복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항

Women's IDC

Women's IDC는 facilitator의 제안을 환영한다.

2bis, 2ter

Women's IDC

Women's IDC는 2bis, 2ter에 대한 facilitator의 제안을 환영한다. 그러나 children을 girls
and boys로 교체하기를 바란다.

근거:

교체는 girls and boys with disabilities가 동등한 기초위에 가정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한
다는 것을 보장하며, 이 권리가 성(gender)과 장애의 상호작용을 근거로하여 특별히 부정되
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제24조 교육

근거:

Women's IDC는 몇몇 대표자가 본회(plenary)에서 이 조항을 재초안할 때 여성에 대한 언
급이 포함되어야 함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facilitator의 제안에서 포함되지 않았음에 실
망하고 있다.

교육은 여성장애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여성장애인의 교육 수준과 literacy rates는 남성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소녀장애인

(girls with disabilities)은 소년장애인보다 덜 자주 학교에 보내지며, 더 높은 교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오직 교육만이 여성장애인의 자주성, 권한부여(empowerment), 경제적 독립을 강화할 수 있다.

Women's IDC는 따라서 다시 한번 다음이 제안을 통해 제24조 안에 여성장애인을 언급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한다.

1. 당사국들은 교육에 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평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차별없이 이러한 교육권을 성취하려는 관점에서 당사국은 모든 수준에서의 (추가: 남성과 여성의 행동의 사회적 문화적 패턴을 영속시키지 않는) (추가: 성인지적인) 통합교육과 평생교육을 보장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a) 인간의 잠재력 개발, 존엄에 대한 감수성, 자아 존중감의 개발 극대화 및 인권 존중, 기본적인 자유 그리고 인류의 다양화 가능성

(b) 장애인의 정신 및 신체적 능력뿐만 아닌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개발 극대화

(c) 자유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 유도

추가:

(d)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동등한 기초 위에 여성장애인의 교육 접근권과 향유권을 보장

2. 당사국들은 본 권리를 실행하며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a) 장애인에 장애 추가: 및 성(sex)로 인해 공고육 시스템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장애 아동, 추가: 특히 소녀가 장애 때문에 무상 의무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제25조 건강

Womens's IDC

(...)

b)bis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의 보호하며, 가족계획, 부모역할(parenthood), 임신, 출산 및 산후 기간과 같은 분야에 있어 여성장애인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보급하며, 이는 여성장애인을 비롯하여, (추가: 강요된) 불임 (추가: 및 낙태)을 포함하여 여하의 형태의 강요하는 처우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

(d) 자유로운 사전 동의를 바탕으로 의료전문가로 하여금 비장애인들과 같은 질의 보살핌을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공공과 민간부문 보건의 윤리적 기준에 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립 및 욕구에 관한 인식 증진을 제공하도록 한다.

근거:

Women's IDC는 facilitator의 제안을 환영한다. 여성장애인은 주류 보건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모성과 산부인 관련 문제는 더욱 그렇다. “강요된” 불임과 “낙태”는 여성장애인이 불임과 낙태에 대해서 그들의 평등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되어야 한다. 게다가 의료분야(medical community)에서 장애와 성(sex)이 상호 효과를 준다는 점에 대한 지식이 현저하게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Women's IDC는 제안된 (d)항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제26조 선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근거:

여성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의 모든 부분에서 과소표시된다. 선진국의 경우도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다. 따라서 제26조에 다음과 같은 제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1. 당사국들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자립을 달성하고,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 능력을 가지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 당사국들은 특히 의료, 고용, 교육,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 성에 근거한 차별 없이) 종합적인 (→ 종합적이고 성인지적인(추가))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구성, 강화, 확장해야 한다.

(a)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시작하고 개인의 욕구에 대한 여러 전문분야별 평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b)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에 있어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며,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7조 근로 및 고용

새로 추가:

(i) 임신 및 출산휴가에 관한 동등하게 보호되는 권리를 포함하여, 동등한 기초 위에서, 여성장애인이 그들의 노동할 권리를 향유하는 것과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이 사업장에서 성

적괴롭힘 또는 다른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보장한다.

근거:

전세계적으로 여성장애인의 4분의 3, 그리고 몇몇 개발도상국의 여성장애인의 거의 100%가 노동력(workforce)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일하는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모두가 종종(성적)괴롭힘을 당한다.

사업장을 살펴보건대, 일반적인 고용인 보호법이 항상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종종 노동조합이 없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할 때 그들의 요구는 종종 만족되지 않으며, 그들의 노동할 권리에 따른 동등한 향유에 영향을 미친다.

제29조

근거:

이 조항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개정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장애인은 성정책(gender policy)과 함께 장애인 정책(disability policy)을 포함하여 정치적·공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과소표시되었다.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단지 거의 대부분 사회적 권리 및 때때로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것이었지,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는 거의 관련된 것이 없었다. 또한 CEDAW 위원회 일반논평 18과 24에서조차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치적·공적 생활에서 권한부여와 참여는 여성장애인의 능력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상관없이 장애가 없는 여성 및 남성장애인과 비교하여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정치적·공적 생활에의 참여를 위한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당사국들은 장애인의 정치적인 권리 및 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이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본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야 하고, 추가: 여성장애인이 이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추가: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행한다.

(a) 직접 혹은 민주적으로 대표자들을 선출했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에 준하여, 평등하게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벽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통해 보장한다.

(i) ...

(ii) 아무런 위협 없이 장애인이 선거 중 비밀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선거를 대표하고, 사무실을 열며, 정부기관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보호

제31조 통계와 수집자료

Women's IDC는 facilitator의 제안을 환영하며 강조하는 바이다.

제33조 국내적 시행 및 모니터링

Women's IDC는 동 협약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IDC의 제안을 지지한다. 의장의 Discussion Text를 고려하건대, facilitator에 의해 제시된 개정을 환영하고 강조하는 바이다.

국제 모니터링

facilitator:

제안은 Discussion Text에 근거한 것으로 아직 facilitator 회의에서 유용한 것은 아님.

제39조- 당사국의 보고

2. 관련당사국을 위한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최소의 종합적인, 성(gender) 및 나이 인지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CRC, 제44조 1항) 당사국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추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위원회는 동 보고서에서 당사국들에 의해 제기되는 본 협약의 문제 또는 규정을 결정해야 한다. (OHCHR background paper, para37)

제44조 organizations(기관? 기구?) 및 bodies(기구)와의 협력

3. 동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증진시키고, 동 협약이 규율하는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서(CRC, 제45조) 유엔의 관련 기관(organs), 공무원(offices), 전문 기구(specialized agencies) 및 기금(funds), 특히 경제사회위원회(department economic and social affairs), 국제노동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 국제보건기구,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여성지위향상국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유엔아동기금(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은 본 협약의 규정의 이행에 있어 그들의 위임사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다룰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동 위원회는 이러한 기관(organs), 공무원(offices), 전문 기구(specialized agencies) 및 기금(funds) 각각의 위임범위안에 해당하는 분야에 있어 동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이들을 참가시킬 수 있으며 그들의 활동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에 있어 동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Women's IDC

Women's IDC는 동 협약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IDC의 제안을 지지한다. 의장의 Discussion Text를 고려하건대, facilitator에 의해 제시된 개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Discussion Text는 여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기구의 적절한 참여를 포함하여, 성균형적 (gender-balanced)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좀 더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